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보호공제사업에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포함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27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교원보호공제사업에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포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을호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 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 교원보호공제사업에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포함

개정안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생략)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다. 1. ~ 3.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u> ③ · ④ (현행과 같음)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에 1,197건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5,050건에 이르렀고, 2024년 1학기 기준 2,358건이 발생하였음.

[표 1]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	1,197	2,269	3,035	5,050	2,358

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자료: 교육부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교원이 직무를 일시 중단하는 사례도 2020년에는 415건이었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3년에 2,965건에 이르렀고, 2024년 1학기 기준 1,022건으로 나타남.

[표 2]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복무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학기
휴직	3	88	23	168	28
전보	12	18	28	136	7
연가	25	74	96	307	30
특별휴가	284	584	796	1,593	653
병가	91	269	357	761	304
합계	415	1,033	1,300	2,965	1,022

자료: 교육부

이에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에 포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 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 ·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동 사업은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²⁾으로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지원내용을 구체화한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안)」이 마련되었음.

2024년 기준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안)」은 ‘피공제자’의 범위를 ‘교육청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³⁾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교원도 요건에 부합하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1)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원지위법」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개정, 2024. 3. 28. 시행

3)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안)」 중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라. ‘피공제자’라 함은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 1) 교육청 관내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현행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는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등을 포함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3]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안)」 주요 내용

구분	보상내용	공제금 지급한도	미보상 사유
배상책임	•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민사상 합의금 포함)	• 1사고당 2억원 •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 타법에 따른 공제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 비용(소제기 포함)	• 심급별 660만원 •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 민사: 고의·중과실 인정 • 형사: 유죄확정
상해치료비 심리상담비	• 치료 및 요양비 • 심리상담비	• 치료·요양비: 1사고당 200만원 • 심리상담: 15회	• 동일사유로 보호조치 지원을 받은 경우
재산상 피해비용	• 휴대폰 훼손 등 비용	• 1사고당 100만원	-
위험대처 서비스	•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시 긴급 경호	• 1사고당 20일	-
분쟁조정 서비스	•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 한도 없음	• 교원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한 분쟁

자료: 교육부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를 위하여 심리상담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별도로 규정할 경우, 피해교원에 대한 복귀 지원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필요한 경우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복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에 따른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원 요건,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 등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29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활동보호센터⁴⁾에서도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동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단계별 지원 내용

1단계(발생)	2단계(지원)	3단계(회복)	4단계(복귀)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 지원팀 구성	•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 심리 상담 지원	• 맞춤형 지원 - 교원의 요구에 따른 회복에 필요한 행정, 법률, 심리 상담 지원	• 복귀 후 지원 - 학교 복귀 후 건강한 교육활동을 위한 복귀 후 프로그램 지원

주: 2023학년도 기준으로 개인·집단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검사, 미술치료 프로그램, 소진 예방 프로그램 등이 제공됨

자료: 교육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4) 「교원지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현재 교원보호공제사업은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손해배상금 지원 및 상해·심리치료 등의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 ① 일시적 중단 및 ② 복귀 지원의 범위가 모호하여 보상 청구 및 지급 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 및 보장 범위의 명료화가 필요함.
- ※ 현재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대상에도 ‘휴직 등으로 직무가 일시 중단된 교원’이 포함되어 있음.
- (지원 대상) 특별휴가·병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교원이 아닌, ‘휴직으로 직무가 일정 기간 이상 중단된 교원’ 등으로 명료화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또는 표준약관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 범위) 학교 복귀 지원이 광범위하여, 침해 직후가 아닌, 직무 중단으로 교육활동 침해 후 시일이 경과된 경우에도 복귀 시 필요한 경우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제22조제2항2호에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게 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상담·심리치료 지원을 받고 직무를 중단한 경우에도 복귀 시 복귀 준비를 위한 상담·심리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정안] 제22조④.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으로 직무 중단한 후 복귀하는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 현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통해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힐링(회복) 프로그램, 소진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 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중검토

- 현행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무를 일시 중단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피해교원에 대해 상담·심리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피해교원의 직무중단 기간 및 복귀 지원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조항 해석에 논란이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189